

추석 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('25.10.3.~'25.10.9.) 수가 지원방안

- 건강보험, 의료급여 수가 지원 -

2025. 10. 1.

보건복지부

1

추석 연휴 운영 진료(조제)지원금

① 주요내용

- 추석 연휴 대비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운영하는 병·의원과 약국에서 연휴동안 진료(조제) 시 한시적 가산 수가 신설

② 적용대상

- (대상기관)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운영하는 병·의원과 약국
 - (병·의원) 외래 방문 환자에게 외래 진료 후 '가-1 외래환자진찰료'를 산정하는 경우
 - (약국) 의약품 조제 후 약국 약제비를 산정하는 경우

③ 적용기간

- 2025년 10월 3일 ~ 2025년 10월 9일 (총 7일)

④ 신청 및 안내

- 기존 '가-1 외래환자 진찰료', 약국 약제비의 수가코드 산정 시, 신설되는 한시적 수가 코드 별도 산정(참고1)
- 한시적 수가로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(참고2)

⑤ 지원방안 문의처

- (의료기관)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☎ 033-739-1531~2
- (약국)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개발부 ☎ 033-739-1558
- (의료급여)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☎ 033-739-3607~8, 3613-5

참고1 추석 연휴 운영 진료(조제)지원금 수가

□ 한시적 추석 연휴 운영 진료(조제)지원금 수가

(단위: 원)

임시코드	분류	금액
IE101 (94101)	(비상) 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	3,000
ZE101	(비상) 추석 연휴 운영 조제지원금	1,000

□ 한시적 추석 연휴 운영 진료(조제)지원금 수가 추석 당일(25.10.6.) 추가가산

(단위: 원)

임시코드	분류	금액
IE102 (94102)	(비상) 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_추석당일	6,000
ZE102	(비상) 추석 연휴 운영 조제지원금_추석당일	2,000

참고2 추석 연휴 운영 진료(조제)지원금 수가 관련 질의·답변

의료기관

1 진료 지원금 수가 산정

연번	질 의	답 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-1	한시적 수가 산정 대상은?	- 추석 연휴 기간 운영하는 병·의원급 의료기관* (종합병원 제외)및 보건의료원 *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: 병원, 요양병원, 정신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: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 「지역보건법」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-2	한시적 수가 산정 방법은?	- 외래 방문 환자를 진료 한 경우, '가-1 외래환자진찰료'와 '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(IE101(94101))'을 같이 산정함 - 단, 추석당일(25.10.6.)은 '가-1 외래환자진찰료'와 '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(IE101(94101))'에 '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_추석당일(IE102(94102))'을 추가 산정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예시1) 추석 연휴(10/3) 병원에 방문한 외래 환자를 진료한 경우 <table><tr><th>항</th><th>목</th><th>줄</th><th>코드구분</th><th>코드</th><th>단가</th><th>일투</th><th>총투</th><th>금액</th></tr><tr><td>01</td><td>01</td><td>0001</td><td>1</td><td>AA155050</td><td>*</td><td>1</td><td>1</td><td>*</td></tr><tr><td>01</td><td>03</td><td>0002</td><td>1</td><td>IE101</td><td>*</td><td>1</td><td>1</td><td>*</td></tr></table>			항	목	줄	코드구분	코드	단가	일투	총투	금액	01	01	0001	1	AA155050	*	1	1	*	01	03	0002	1	IE101	*	1	1	*									
항	목	줄	코드구분	코드	단가	일투	총투	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01	01	0001	1	AA155050	*	1	1	*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01	03	0002	1	IE101	*	1	1	*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예시2) 추석당일(10/6) 병원에 방문한 외래 환자를 진료한 경우 <table><tr><th>항</th><th>목</th><th>줄</th><th>코드구분</th><th>코드</th><th>단가</th><th>일투</th><th>총투</th><th>금액</th></tr><tr><td>01</td><td>01</td><td>0001</td><td>1</td><td>AA155050</td><td>*</td><td>1</td><td>1</td><td>*</td></tr><tr><td>01</td><td>03</td><td>0002</td><td>1</td><td>IE101</td><td>*</td><td>1</td><td>1</td><td>*</td></tr><tr><td>01</td><td>03</td><td>0003</td><td>1</td><td>IE102</td><td>*</td><td>1</td><td>1</td><td>*</td></tr></table>			항	목	줄	코드구분	코드	단가	일투	총투	금액	01	01	0001	1	AA155050	*	1	1	*	01	03	0002	1	IE101	*	1	1	*	01	03	0003	1	IE102	*	1	1	*
항	목	줄	코드구분	코드	단가	일투	총투	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01	01	0001	1	AA155050	*	1	1	*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01	03	0002	1	IE101	*	1	1	*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01	03	0003	1	IE102	*	1	1	*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-3	2025년 10월 3일 이전에 외래에 내원한 환자가 한시적 수가 적용일 이후까지 체류하고 진료한 경우 수가 적용방법은?	- 한시적 수가 적용은 2025년 10월 3일 0시 이후 외래에 내원하는 환자부터 적용하며, 2025년 10월 9일 24시 이전에 진찰이 이루어진 환자까지 적용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연번	질 의	답 변
1-4	진찰료가 2회 이상 산정된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방법은?	- 진찰료 청구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함
1-5	한시적 수가는 공휴일 또는 야간, 소아가산 및 종별 가산 등 가산을 적용하는지?	- 한시적 수가는 공휴·야간, 소아, 종별 등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
1-6	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 자격은?	- 건강보험 환자(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)와 의료급여 환자만 산정 가능 - 자동차보험, 보훈환자는(단일자격) 한시적 수가 적용 불가함
1-7	(신)포괄수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지?	- 행위별수가제의 대상환자, 한시적 수가코드 및 산정기준 등 동일적용
1-8	일시 처방 받은 물리치료, 주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도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지?	- 일시처방 받은 물리치료, 주사 등을 실시한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불가
1-9	진료의사와 상담 후 대리수령자가 처방전 및 약제를 수령한 경우에도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지?	- 대리수령자가 처방전 및 약제를 대리수령한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불가
1-10	의료기관 소속 계약의사 또는 협약 의료기관 의사가 시설입소자에게 원외 처방전을 교부한 경우에도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지?	- 의료기관 소속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시설입소자에게 원외처방전을 교부한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불가
1-11	'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'에 참여하여 '가-1 외래환자 진찰료'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, 한시적 수가 산정 방법은?	- '소아전문관리료' 청구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함
1-12	비대면 진료 시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지?	- 외래 방문 환자(대면진료)에게 산정 가능함. 비대면 진료는 한시적 수가 산정 불가
1-13	혈액투석 정액수가를 산정하는 의료 급여 수급권자도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지?	- 혈액투석 정액수가를 산정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한시적 수가 산정 불가

2 청구방법

연번	질 의	답 변
2-1	진료지원금 산정 시 명세서 진료 내역의 항, 목번호는?	- 명세서 진료내역 <u>의·치과</u> "01항"(진찰료) "03목"(응급 및 회송료 등) <u>한방</u> "01항"(진찰료) "99목"(기타) 란에 기재하여 청구함
2-2	본인부담금 발생여부는?	- 한시적 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부담금(기금부담금)으로 청구함
2-3	건강보험(의료급여)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시, 청구방법은?	- 건강보험(의료급여)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국비 환자의 경우, 명세서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명세서 일반내역 '공상 등 구분'란에 '4' 또는 'B'를 기재, 보훈 감면환자의 경우 감면율에 따른 특정내역(MT038)을 기재하여 합산 청구
2-4	(신)포괄수가에서 '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' 청구방법은?	- 외래 진료 후 입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기존 '가-1 외래환자 진찰료' 수가코드는 L항 81목에, 신설되는 진료지원금 한시적 수가 코드는 진료 내역 "01항"(진찰료) "03목"(응급 및 회송료 등)란에 기재하여 별도 산정함 - 이 경우, '변경일'란에 해당 날짜를 기재하여 청구함 * '변경일'란 기재형식: CCYYMMDD

(예시1) 추석연휴(10/3) 외래 진료 후 입원으로 이어지는 경우

항	목	줄	코드구분	코드	단가	일투	총투	금액	변경일
01	03	0001	1	IE101	*	1	1	*	20251003
L	81	0002	1	AA155050	*	1	1	*	20251003

(예시2) 추석당일(10/6) 외래 진료 후 입원으로 이어지는 경우

항	목	줄	코드구분	코드	단가	일투	총투	금액	변경일
01	03	0001	1	IE101	*	1	1	*	20251006
01	03	0002	1	IE102	*	1	1	*	20251006
L	81	0003	1	AA155050	*	1	1	*	20251006

약 국

1 조제지원금 수가 산정

연번	질 의	답 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-1	한시적 수가 산정 대상은?	- 추석 연휴 기간 운영하는 약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-2	약국 조제지원금 수가 산정 방법은?	- 추석 연휴기간 조제분에 한해서 제15장 약국 약제비와 함께 산정하며, 약제비의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가능함 - 단, 추석 당일(25.10.6.)은 '추석 연휴 운영 조제 지원금_추석당일(ZE102)' 추가 산정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예시1) 추석 연휴(10/3)에 처방 조제한 경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><tr><th>항</th><th>목</th><th>출번호</th><th>코드구분</th><th>코드</th><th>단가</th><th>일투</th><th>총투</th><th>금액</th><th>면허종류</th><th>면허번호</th></tr><tr><td rowspan="6">02</td><td rowspan="6">01</td><td>0001</td><td>1</td><td>Z1000</td><td>760</td><td>1</td><td>1</td><td>760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0002</td><td>1</td><td>Z2000050</td><td>2,160</td><td>1</td><td>1</td><td>2,160</td><td>4</td><td>12345</td></tr><tr><td>0003</td><td>1</td><td>Z3000050</td><td>1,450</td><td>1</td><td>1</td><td>1,450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0004</td><td>1</td><td>Z4101050</td><td>2,280</td><td>1</td><td>1</td><td>2,280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0005</td><td>1</td><td>Z5000</td><td>660</td><td>1</td><td>1</td><td>660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0006</td><td>1</td><td>ZE101</td><td>1,000</td><td>1</td><td>1</td><td>1,000</td><td></td><td></td></tr></table>			항	목	출번호	코드구분	코드	단가	일투	총투	금액	면허종류	면허번호	02	01	0001	1	Z1000	760	1	1	760			0002	1	Z2000050	2,160	1	1	2,160	4	12345	0003	1	Z3000050	1,450	1	1	1,450			0004	1	Z4101050	2,280	1	1	2,280			0005	1	Z5000	660	1	1	660			0006	1	ZE101	1,000	1	1	1,000											
항	목	출번호	코드구분	코드	단가	일투	총투	금액	면허종류	면허번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02	01	0001	1	Z1000	760	1	1	76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0002	1	Z2000050	2,160	1	1	2,160	4	1234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0003	1	Z3000050	1,450	1	1	1,45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0004	1	Z4101050	2,280	1	1	2,28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0005	1	Z5000	660	1	1	66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0006	1	ZE101	1,000	1	1	1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예시2) 추석 당일(10/6)에 처방 조제한 경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><tr><th>항</th><th>목</th><th>출번호</th><th>코드구분</th><th>코드</th><th>단가</th><th>일투</th><th>총투</th><th>금액</th><th>면허종류</th><th>면허번호</th></tr><tr><td rowspan="7">02</td><td rowspan="7">01</td><td>0001</td><td>1</td><td>Z1000</td><td>760</td><td>1</td><td>1</td><td>760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0002</td><td>1</td><td>Z2000050</td><td>2,160</td><td>1</td><td>1</td><td>2,160</td><td>4</td><td>12345</td></tr><tr><td>0003</td><td>1</td><td>Z3000050</td><td>1,450</td><td>1</td><td>1</td><td>1,450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0004</td><td>1</td><td>Z4101050</td><td>2,280</td><td>1</td><td>1</td><td>2,280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0005</td><td>1</td><td>Z5000</td><td>660</td><td>1</td><td>1</td><td>660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0006</td><td>1</td><td>ZE101</td><td>1,000</td><td>1</td><td>1</td><td>1,000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0007</td><td>1</td><td>ZE102</td><td>2,000</td><td>1</td><td>1</td><td>2,000</td><td></td><td></td></tr></table>			항	목	출번호	코드구분	코드	단가	일투	총투	금액	면허종류	면허번호	02	01	0001	1	Z1000	760	1	1	760			0002	1	Z2000050	2,160	1	1	2,160	4	12345	0003	1	Z3000050	1,450	1	1	1,450			0004	1	Z4101050	2,280	1	1	2,280			0005	1	Z5000	660	1	1	660			0006	1	ZE101	1,000	1	1	1,000			0007	1	ZE102	2,000	1	1	2,000		
항	목	출번호	코드구분	코드	단가	일투	총투	금액	면허종류	면허번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02	01	0001	1	Z1000	760	1	1	76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0002	1	Z2000050	2,160	1	1	2,160	4	1234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0003	1	Z3000050	1,450	1	1	1,45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0004	1	Z4101050	2,280	1	1	2,28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0005	1	Z5000	660	1	1	66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0006	1	ZE101	1,000	1	1	1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0007	1	ZE102	2,000	1	1	2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-3	동일 환자에게 2매 이상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 조제지원금 산정 방법은?	- 제 15장 약국 약제비 청구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연번	질 의	답 변
1-4	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동일환자에 대하여 동일 요양기관에서 1일 2회 이상 직접 조제·투약하는 경우, 약국 조제지원금의 산정은?	- 각각 산정 가능함
1-5	한시적 수가는 공휴일 또는 야간, 소아 가산 및 종별 가산 등 가산을 적용하는지?	- 소아, 공휴·야간, 종별 등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않음
1-6	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 자격은?	- 건강보험 환자(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)와 의료급여 환자만 산정 가능함 - 자동차보험, 보훈환자(단일자격)는 한시적 수가 적용 불가함
1-7	2025년 10월 3일 이전에 발행된 처방전으로 한시적 수가 적용기간에 내방했을 경우 수가 적용방법은?	- 한시적 수가 적용은 2025년 10월 3일 0시 이후 부터 2025년 10월 9일 24시 이전에 조제투약 하는 경우 산정 가능함
1-8	한시적 수가 적용기간 동안 발행된 처방전을 2025년 10월 9일 24시 이후에 내방하여 조제했을 경우 수가 적용 방법은?	- 한시적 수가 적용은 2025년 10월 3일 0시 이후 부터 2025년 10월 9일 24시 이전에 조제투약 하는 경우 산정 가능함

2 청구방법

연번	질 의	답 변
2-1	약국 조제지원금 산정 시 명세서 조제 투약내역의 항, 목번호는?	- 명세서 조제투약내역 "02항 01목"(조제로 등)란에 기재하여 청구함
2-2	본인부담금 발생여부는?	- 한시적인 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부담금(기금부담금)으로 청구함
2-3	건강보험(의료급여)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시, 청구방법은?	- 건강보험(의료급여)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국비 환자의 경우, 명세서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명세서 일반내역 '공상 등 구분'란에 '4'를 기재, 보훈 감면환자의 경우 '3' 또는 '5, 6, J'를 기재 및 특정내역(MT038)을 기재하여 합산 청구함

지원방안별 문의처			
번호	지원방안	문의처	연락처
1	추석 연휴 운영 진료(조제)지원금	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	033-739-1531~2
		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개발부	033-739-1558
		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	033-739-3607~8, 3613~5